

## 【 국내금융 뉴스 】

###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

□ 금융위원회는 3월 22일 상호저축은행법의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(안)을 규정하여 입법예고 함.

- 개정(안)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, 법제처 심사, 차관·국무회의를 거친 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.
- 단, ‘대주주 자격의 주기적 심사제도’ 등과 같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내용의 대부분이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대통령령 위임규정은 시행일에 맞춰 추가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.

□ 개정(안)은 동법의 개정으로 자기자본 정의, 지점설치 기준, 경영건전성 기준 등의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대통령령 위임사항의 변경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.

- 자기자본이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산출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.
  - 자기자본의 구성체계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으로 규정하고 자기주식 등 자본총실에 기여하지 않는 항목 등을 공제하도록 함.
- 지점설치 인가기준인 자기자본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종전의 기준이었던 회계상 자본을 그대로 지점설치 인가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명확히 함.
  - 회계상 자본이란 직전 분기말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함.
- 경영건전성 기준으로 유동성 기준 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해당 시행령에서도 ‘유동성부채 대비 유동성자산 보유비율’로 유동성 기준을 규정함.

(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관련, 금융위 중소기업금융과, 4/30)